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제4호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공인회계사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른 세무사”를 “공인회계사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“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7조”를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”로, “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”로, “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”를 “배출업체”로, “온실가스·에너지”를 “온실가스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제7항”을 “법 제32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작성 방법과 그 밖에 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공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

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에너지진단 수행현황

2. 에너지진단 보고서

3. 에너지진단결과 개선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결과 이행률

4. 고객만족도

5. 의무진단 추진실적

6. 그 밖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통지하고,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진단기관 평가 방법 및 절차,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3조제2항제17호 중 “법 제32조제7항”을 “법 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제7항”을 “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“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제7항”을 “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) ① (생략)	제24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	②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	4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이</u> -----
5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	5. ----- <u>공인회계사</u> -----

제29조(에너지진단의 면제 등)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29조(에너지진단의 면제 등) ① --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(이하 “ <u>목표관리업체</u> ”라 한다)로서 <u>온실가스·에너지</u> 목표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. 다만,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·고시된 업체는 제외한다.	6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----- 같은 법 <u>제17조</u> ----- <u>배출업체</u> ----- <u>온실가스</u> 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“진단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	제30조(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) ① <u>법 제32조제8항</u> -----

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 <신설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작성 방법과 그 밖에 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신설>	제30조의2(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평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에너지진단 수행현황 2. 에너지진단 보고서 3. 에너지진단결과 개선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결과 이행률 4. 고객만족도 5. 의무진단 추진실적

제3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6. (생략) 17.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. ~ 24. (생략) ③ (생략)	6. 그 밖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통지하고,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④ 그 밖에 진단기관 평가 방법 및 절차,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제3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법 제32조제8항----- ----- ----- 18. ~ 2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